

위수령에 대한 이해

□ 위수령의 개념

△ 위수(Garrison)의 사전적 의미는 군의 주둔지를 지킨다는 뜻임(경비)
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군부대 조직의 효과성을 약화될 수 있는 모든 의도적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함

△ 위수령의 입법목적은 육군부대를 특정한 지구에 주둔하게 하면서 부대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에 관한 것임

□ 위수령의 연혁

△ 위수령은 1948년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하여
1950.3.27.제정

△ 1970년 개정 시 육군총참모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,

△ 2001년, 2003년 개정 역시 “하사관”을 “부사관”으로, “군속”을 “군무원”으로 변경한 바 있음

☞ 1950년 제정시와 그 내용상 차이는 없음.

□ 위수령의 성질

△ 위수령은 육군 각 부대의 질서유지(경비)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로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

☞ 해군, 공군, 해병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

위수사령관이라 하더라도 육군이외의 타군 소속 부대를 지휘하거나 이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, 타군은 이에 따를 의무 없음. (국방부 1976.6.2.인사국 답변)

△ 위수령은 그 명칭에서 주는 인상으로 인계계엄령과 같이 특정 명령의 발령 상태로 이해되기 쉬우나 대통령령인 행정입법임.

□ 위수령에 근거한 병력출동 사례

- △ 1965.8.14.한일협정 비준안이 국회 통과 시,서울시장 요청에 의해 서울시 일원에 병력출동 (1965.8. 26.-9.25.)
- △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격화 시, 서울시장 요청에 의해 9개 대학에 병력출동 (1971.10.15.-11.9.)
- △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 시,경남도지사 요청에 의해 마산지역에 병력출동 (1979.10.20. 10.26.)

※ 위수령은 군부대 주둔지 이동에 관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주둔하는 부대의 경비에 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,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부대 주둔지 이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.

□ 위수령과 관련된 지휘체계

- △ 위수와 관련된 지휘체계는 육군참모총장이 각 사단장을 통할하고, 사단장은 사단 관할 지역내의 각 위수사령관을 감독
 - 입법의 성격이 육군 부대의 경비 목적이므로, 군령권이 있는 합참의장이라 하더라도 위수사령관에 대한 위수 근무 감독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.
 - 병력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야전군사령부령등의 대통령령과 상충되는 것인데, 병력출동에 관해서는 결국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임. (위수령은 병력출동에 관한 승인권자를 육군 참모총장으로 정하고 있음)

□ 위수령과 병력출동

- △ 위수령은 육군부대의 위수 근무 외에 행정응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. 과거 이러한 행정응원적 성격의 병력 출동이 있었던 것이나 실질은 행정응원을 뛰어 넘음
 -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 요청을 받은 경우 병력출동(부대 경비라는 위수의 본질적 내용과는 거리가 먼 행정응원에 관한 내용임)
 - 행정응원 : 현행범인의 체포나 경찰관의 원조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인의 체포 가능하며 형사피고인의 호송 등을 위한 호위병 제공

△ 위수령 뿐만아니라 야전군사령부령 등 거의 모든 제대단위 설치법규에 '재해 또는 비상 사태시지방자치단체장에 병력출동의 요청이 있을 때, 병력 출동할 수 있는 규정' 을 두고 있음

☞ 야전군사령부령 (제 6 조), 작전사령부령 (제 6 조 제 2 항),
군단사령부 (제 6 조), 보병사단령 (제 8 조), 해병사단령 (제 8 조)

△ 위수령에 근거하여 병력 출동 하더라도 그 기본적 임무는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른행정응원의 범리에 의해 치안유지 활동에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함

☞ 위수령은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군이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더라도 경찰의 치안행정을 응원하는 보충적인 협조에 그쳐야 함

□ 위수령과 병기사용

△ 위수근무자는 적극적 공격적인 병기사용은 불가능하고, 소극적인 자위 목적에 한하여 사용 가능

1)자위 차원에서, 2)다중성군하여 폭행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 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, 3)신체 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무기 사용 가능

□ 위수령에 대한 법체계상의 문제점

△ 위수령은 군의 병기사용, 민간인의 체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,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 있음